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이해

김원일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업서기관

오늘날 농산물유통분야는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농산물유통이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대형할인점, 식자재업체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 브랜드개발, 거래선 확보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2002년 12월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근거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하였고 시험과목선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준비를 거쳐 2003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는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농산물의 규격출하지도, 그밖에 유통효율화 등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시험자격부여에 대해 설명하면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

험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우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제2차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며 2차실기 시험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자격시험 2차시험에 한번 더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1차선택형 필기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령, 원예학개론(수확후의 품질관리론 포함), 농산물유통론이며 최종 합격기준 각과목 4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이 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실기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지난 2004년 제1회농산물품질관리사 선발시험을 2월에 1차필기시험과 4월 2차실기시험을 거쳐 88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에 제2회농산물품질관리사 선발시험을 1차필기시험을 1월 16일에, 2차실기 시험을 3월 20일에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취업을 전제로 한 시험은 아니며 농산물품질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품질관리사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취업을 전제로 한 시험은 아니며 농산물품질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 분	과 목	합격기준	비 고
1차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안법• 원예학개론(수확후품질관리론 포함)• 농산물 유통론	평균점수 60점 이상	각 과목별 40점미만 득점은 불합격 처리
2차 (실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품질관리 실무<ul style="list-style-type: none">-등급판정, 표준규격 표시, 품종 구분, 결점과 고리기, 계측기기 사용법 등	70점 이상	